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7-10-10 규정 제183호
(개정) 2009-06-15 규정 제210호
(개정) 2009-12-10 규정 제216호
(개정) 2012-10-15 규정 제281호
(개정) 2016-04-10 규정 제393호
(개정) 2017-06-30 규정 제4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인조잔디구장, 강당, 테니스장, 수영장, 야외공연장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부서인 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제3조(사용신청·허가 등)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를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전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시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교과목 강의 및 체육부 훈련
2. 학생·교직원의 공식행사 및 체육활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일반시민의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5.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문화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오전 · 오후	사용시간	비 고
평 일	오 전	06:30 ~ 08:30	인조잔디구장은 제외
	오 후	18:30 ~ 22:00	
공 휴 일	오전 · 오후	06:30 ~ 22:00	

제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구장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용시설별	시간당 사용료	전일 사용료	비고
인조잔디구장	30,000	200,000	
강 당	10,000	100,000	
테니스장	10,000	100,000	
수영장	10,000	100,000	상수도료 별도
야외공연장	10,000	100,000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수급권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3. 대학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지역 체육관련 연합단체
4.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의 납부 · 처리 등)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는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개정 2016.4>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학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학업분위기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문화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양도의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 10.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6.4> <개정 2017.06.30.>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신청인	주 소			
	단체명		☎	사무실 : 핸드폰 :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사용인원		명		
연락처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사용책임자 : (인) 붙임 : 행사계획서 1부. 이행각서 1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사 용 허 가 증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설명	
사용자	(명)
20 . .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인)	

행 사 계 획 서

○ 단 체 명 :

○ 차량대수 :

○ 발생 쓰레기 처리방안 :

○ 경기종목 :

○ 행사장 배치 :

단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개정 2016.4>

이 행 각 서

강원도립대학교의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와 담배는 그라운드(우레탄 트랙, 축구장)에 절대 반입하지 않는다.
2. 운동장에는 확성기, 텐트, 차량, 자전거, 취사 등 일체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3. 운동장 내에는 애완동물, 자전거, 어린이 놀이기구 등 일체의 반입을 하지 않는다.
4. 사용 직후 그라운드 정리정돈과 스탠드 청소하며,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5. 만약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시킨다.
6. 사용 중 부상 등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학교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7.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8. 허가된 사용시간을 준수한다.
9. 사용허가 후라도 본교 행사등의 일정에 협조한다.
10. 위 사항을 위반할 시는 즉시 퇴장하며, 해당하는 법적책임을 진다.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개정 2016.4>

〔별표 제2호〕 <개정 2016.4>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사무실:
	대 표 자			자 택:
사 용 시 설				
행 사 명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 경 사 유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제3호〕 〈개정 2016.4〉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사무실 :
	대 표 자			자 택 :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감 면 사 유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제4호〕 <개정 2016.4>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사무실:
	대 표 자			자 택:
당초신청 시설				
사용료 납부일		년 월 일		
반환신청액		일금 원정		
반환사유				
강원도립대학교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